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관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914
----------	-----

발의년월일 : 2015년 11월 26일

발 의 자 : 최관술 의원(1명)

찬 성 자 : 김정태·유동균·오봉수·김태수·
김동율·김창수·박진형·박양숙·
유광상·김진철·권미경·김창원·
신언근·박호근·문형주·문종철·
서윤기·이현찬·서영진·성백진·
김기대·최영수·이윤희·김구현·
김생환·장우윤·김인호·김미경·
김혜련·강성언·김영한·조상호
의원(32명)

1. 제안 이유

「자동차관리법(이하 ‘법’)」 개정¹⁾으로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불법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 및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자동차 유통의 건전성과 시민 안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임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9조제13호, 제80조제1호, 제80조제5호의3,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 또는 제84조제2항제20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및 제81조제7호의2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 시행일 : 2016.2.12>

2. 주요 골자

- 가.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를 포함함(안 제3조)
- 나. 위 ‘가’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함(안 제4조 및 별표1)
- 다.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마련함(안 별표2)

3. 참고 사항

- 가. 관련 법령
 -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 조치 : 해당 없음(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포상금을 지급(제3호, 제5호, 제6호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4.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
5.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6.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별표1 중 3.~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 행위	포상금	비고
3.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150,000	
4.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	150,000	
5.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150,000	
6.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150,000	

별표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7조 관련)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E-mail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신고사항	신 고 일	년 월 일 시 분	
	피신고인	성명(업체명)	
		주소	
신고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의거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구청장 귀하</p>			
<p style="font-size: small;">첨부 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3호, 제80조제1호, 제80조제5호의3,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 또는 제84조제2항제20호에 대한 위반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p>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최관술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u>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 다만, 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에 지급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p> <p>1. ~ 2.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 ----- ----- ----- <u>포상금을 지급(제3호, 제5호, 제6호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u> ----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현 행

[별표 1]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 관련)

(단위: 원)

위반 행위	포상금	비고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위반	300,000	
2.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위반	300,000	

개 정 안

[별표 1]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 관련)

(단위: 원)

위반 행위	포상금	비고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위반	300,000	
2.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위반	300,000	
3.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u>150,000</u>	
4.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	<u>150,000</u>	
5.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u>150,000</u>	
6.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u>150,000</u>	

〈신 설〉 [별표 2]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7조 관련)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E-mail			
신고사항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신 고 일	년 월 일 시 분		
	피신고인	성명(업체명)		
		주소		
	신고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위와 같이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의거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년 월 일 신청인 (인) </div>				
○○ 구청장 귀하				
첨부 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3호, 제80조제1호, 제80조제5호의3,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 또는 제84조제2항제2호에 대한 위반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